



통보

부록

다음의 2026년 4월 6일자 통보문은 미합중국 대표의 요청으로 회람한다.

제목: 성층권 오존 보호: 냉동·공기조화 및 소화 분야의 중요 신규 대체물질 정책 프로그램에 따른 대체물질 목록 등재; 규칙안 제정 예고 보충 공지

부록 사유:	
<input type="checkbox"/>	의견 마감일 변경 - 날짜:
<input type="checkbox"/>	통보 조치의 채택 - 날짜:
<input type="checkbox"/>	통보 조치의 공표 - 날짜:
<input type="checkbox"/>	통보 조치의 시행 - 날짜:
<input type="checkbox"/>	최종 조치 전문 확인 출처 ¹ :
<input type="checkbox"/>	통보 조치의 철회 또는 취소 - 날짜: 조치가 재통보된 경우 관련 통보문 기호: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변경된 통보 조치의 내용 또는 범위 및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출처 ¹ : 이 보충 제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는 한 2026년 5월 6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한다. 공청회가 개최된다면, 이 보충 제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. https://members.wto.org/crattachments/2026/TBT/USA/modification/26_01909_00_e.pdf 새로운 의견 수렴 마감일(해당될 경우): 2026-05-06
<input type="checkbox"/>	발행된 해석 지침 및 전문 조회 ¹ :
<input type="checkbox"/>	기타:

내용: 추가 제안 규정 - 미국 환경보호청(EPA)의 중요 신규 대체물질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, 이 조치는 냉매 2,3,3,3-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(HFO-1234yf라고도 함)을 대형 픽업트럭 및 완전 대형 밴의 개조용 자동차 공조 최종용도에서 사용 조건에 따라 허용 가능한 물질로 등재할 것을 제안한다. 이 조치는 대형 픽업트럭 및 대형 밴(완전 밴 및 불완전 밴 모두)의 개조용 자동차 공조 최종용도에서의 제안된 등재와 관련하여 EPA의 2025년 11월 10일자 제안을 보완한다. EPA는 또한 해당 규칙안의 의도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제안을 보완하고 있다. EPA는 추가 등재 및 명확화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 EPA는 이 보충 제안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2025년 11월 10일자 제안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기간을 재개하지 않는다.

¹ 최종 조치 및/또는 해석지침 문서의 전문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, PDF 첨부파일,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.

공청회: 공청회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2026년 4월 13일까지 [동부 일광절약시간](#) 기준 [오후 5시](#) 이전에 **추가 정보 문의** 섹션에 기재된 담당자(Emily Maruyama, 이메일: maruyama.emily@epa.gov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청문회가 개최된다면, 2026년 4월 21일 또는 그 전후에 개최된다. 공청회에 관한 추가 정보는 **보충 정보** 섹션을 참조하기 바란다.

91 연방관보(FR) 17176, 2026-04-06; [제목 40](#) 연방규정집(CFR) 제82편:

<https://www.govinfo.gov/content/pkg/FR-2026-04-06/html/2026-06665.htm>

<https://www.govinfo.gov/content/pkg/FR-2026-04-06/pdf/2026-06665.pdf>

이 추가 제안 규정과 기존 규칙안은 미국 환경보호청 도켓 번호 EPA-HQ-OAR-2024-0503으로 식별된다. 도켓 폴더는 Regulations.gov(<https://www.regulations.gov/docket/EPA-HQ-OAR-2024-0503/document>)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, 주요 문서와 보조 문서 및 접수된 의견에 접근할 수 있다. 문서는 접수번호를 검색하여 [Regulations.gov](#)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.

WT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는 2026년 5월 6일 [동부 표준시 오후 4시](#) 이전까지 [미국 TBT 질의처](#)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WT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미국 TBT 질의처가 접수된 의견은 미국 환경보호청(EPA)과 공유되며, 의견수렴 기간 내에 접수된 경우 Regulations.gov의 [도켓](#)에도 제출된다.